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51

발의연월일: 2021. 1. 26.

발 의 자:윤준병ㆍ기동민ㆍ김민철

김성환 · 김윤덕 · 노웅래

민형배 • 양이원영 • 이수진

이용빈 · 인재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,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상임조합 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,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 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,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202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16.2%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존재하였음.

이에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38조).

법률 제 호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이사"를 "조합원인 이사"로, "다음 각 호와 같고"를 "4년으로 하되"로, "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"을 "두 차례만"로 하고,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각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다섯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④ 설립 당시의 조합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,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1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제38조제1항"을 각각 "제3 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하여 제3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임원의 임기) ① 조합장과	제38조(임원의 임기) ①
<u>이사</u> 의 임기는 <u>다음 각 호와</u>	- <u>조합원인 이사4년으</u>
<u>같고</u> , <u>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</u>	<u>로 하되두 차례만</u>
하며,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까	<u><단서 삭제></u>
<u>지만</u> 연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설</u>	
립 당시의 조합장・이사 및 감	
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,	
2년을 초과할 수 없다.	
1.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: 4	<u><삭 제></u>
<u>년</u>	
2.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	<u><삭 제></u>
<u>이사: 2년</u>	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의 이사를 제외한 이
	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다
	<u>섯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④ 설립 당시의 조합장・이사
	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
	하되,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<u>제1항</u> 에 따른 임원의 임기	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
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	<u>정</u>
단서를 준용한다.	

제61조의2(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) ①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합병으로 소멸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설립등기일 현재 조합장의 의 종전 임기 중 남은 임기가 2년을 초과하면 그 조합장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.

②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의 변경등기 당시 재임 중인 조합 장, 이사 및 감사의 남은 임기 가 변경등기일 현재 2년 미만 이면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그 임기를 변경등기일부터 2년으로 한다.

세61조의2(합병에 따른 임원 임
기에 관한 특례) ①
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
규정
②
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
의 규정